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-67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8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장학사업의 대상을 확대하여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 
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장학사업 대상 확대 (안 제2조제2호, 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)

- 기존 중·고등·대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장학사업 대상 확대

나.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조례 문구 정비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규제여부 :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  
되지 않음

#### 4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15. 6. 25. ~ 7. 15. (제출된 의견 없음)

나.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다.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라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회 심의·의결(2015. 8. 18)

마.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바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“학교”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를 말한다.

제3조 중 “그 밖에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예술·체육·그 밖의 기능에 재능이 있는 초등학교의 재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

제8조 전단 중 “관련 하여”를 “관련하여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 후단 중 “구의회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도시관리국장”을 “도시환경국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1회에 한하여”를 “한 차례만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전단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2항 중 “소속직원”을 “소속 공무원”으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학교”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중학교·고등학교를 말한다.</p> <p>3. (생 략)</p> <p>제3조(적용범위) 재단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는 「민법」과 「공익법인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, <u>그 밖에</u>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제6조(장학금 지급대상) ①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구에 주소를 두고, 장학금 신청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다른 장학금 수혜사실이 없는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“학교”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를 말한다.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적용범위) ----- -----, <u>그 밖의</u> ----- -----.</p> <p>제6조(장학금 지급대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예술·체육·그 밖의 기능에 재능이 있는 초등학교의 재학</u></p>

② (생략)

제8조(자료제공) 재단은 구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 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, 재단은 제공된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

제11조(임원) ① (생략)

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고 선임직 이사는 인재육성 등 장학 사업 또는 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등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 이 경우 선임직 이사에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는 구의 안전행정국장, 기획경제국장, 복지교육국장, 도시관리 국장,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.

④ (생략)

생으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자료제공) -----  
----- 관  
련하여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제11조(임원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 
회-----.

③ -----  
-----  
----- 도시환경국장-----  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  
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 
다.

⑥ (생략)

제15조(사업계획 등의 제출) ①  
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  
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의  
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  
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  
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 
같다.

② (생략)

제19조(지도감독) ① (생략)

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  
의 업무 및 회계·재산 등에 관  
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, 소  
속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 
확인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③ ~ ⑤ (생략)

⑤ -----,  
한 차례만 -----.

⑥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사업계획 등의 제출) ① -  
-----  
----- 해당 -----  
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지도감독) ① (현행과 같  
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소속 공무원-----  
---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